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기간	
의료기관 [] 지정신청서 [] 변경신고서		15일 (지정)	5일 (변경)

지정 신청 구분		[] 일반지정 [] 진폐일반 [] 진폐전문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	
산재보험 의료기관	④명칭		⑤개설자(대표자)
	⑥소재지	☎ FAX	
	⑦진료과목		⑧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법인등록번호
	⑪건강보험요양기호		⑫산재보험 담당자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⑬의료기관 명칭			
⑭의료기관 소재지			
⑮법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⑯진료과목·의료기관 종류			
⑰시설·장비·인력·운영 현황			
⑱기타(산재보험담당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공통) 2.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공통) 3. 의료기관 개요서 1부(지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지정) 5. 의료기관 개설자의 예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정) 6.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	- 영상의학과 의원은 제3호 서류 제출 생략 가능(지정) - 담당 직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4호 생략 가능(공통) - 첨부(붙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이용 동의	신고인(신청인)은 이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첨부(붙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 / 부동의 []] 합니다.	
<공지사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신고인(신청인) 또는 의료기관의 전화번호(휴대전화)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 대여한 의료인은 지급된 진료비의 배액 반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한